

#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4년 6월 2차



## 주요 현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06.19]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 여성가족부,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고, 현재까지 제재 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며,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7V3GrfrrKTxhPyYJk3eYGo.mogef10?mid=news405&bbsn=709991](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7V3GrfrrKTxhPyYJk3eYGo.mogef10?mid=news405&bbsn=709991)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06-11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 최소화(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4-06-11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 강화(안 제18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 확대(안 제76조제1항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2024-06-11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안 제18조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06-1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 개선(안 제71조제2항제4호)

가족· 돌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2024-06-1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안 제75조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2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안 제76조제1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06-12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안 제75조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4-06-12	임신기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안 제60조제6항 및 제74조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2024-06-12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20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2항·제19조의2제4항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3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안 제74조의3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3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가족· 돌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3	사용자는 근로자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024-06-13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3인)	2024-06-14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안 제4조제1항 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20인)	2024-06-17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확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2024-06-17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 마련(안 제4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06-18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출산 이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도모(안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06-18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안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제2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06-18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등)

가족·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06-18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적극 지원(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2024-06-18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 (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3인)	2024-06-18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보다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1인)	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고,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안 제74조제1항·제6항 및 제93조제8호, 안 제74조제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06-19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59조의4제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06-19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안 제34조의4 신설 등)

가족·돌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06-19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 향상(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4-06-19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 보장(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06-20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2024-06-20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는 등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6-20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안 4조제1항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06-20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 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도모(안 제2조제6호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06-20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며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 향상(안 제22조제2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06-20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

가족·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2024-06-20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이돌봄광역 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의원 등 10인)	2024-06-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안 제17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06-21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안 제23조의4제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4인)	2024-06-24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에 따라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경의원 등 12인)	2024-06-24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며,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그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 부과(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경의원 등 12인)	2024-06-24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 보장(안 제75조·제76조제1항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의원 등 17인)	2024-06-2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안 제33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06-2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저출산·고령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4-06-1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안 제26조 및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06-19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업자 또는 그 가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안 제75조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2024-06-19	저출생 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력 담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6항,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 제29조부터 제45조)
건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2024-06-11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안 제74조제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2024-06-20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안 제74조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06-25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 경감(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06-25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 경감(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젠더 폭력· 안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06-11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포함(안 제59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06-13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 도모(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06-12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 도모(안 제1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06-18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4-06-18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2024-06-19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톱킹 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9조제7항 단서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06-24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안 제10조의5·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법·계획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2024-06-14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안 제12조)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및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6.20	세계일보	출산·육아, 민폐로 여기는 기업들?…“직장인 49% ‘갑질 피해자’”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9518664">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9518664</a>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6.12	이데일리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김중숙 원장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3892106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38921064</a>
		“女 고용률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360663892106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3606638921064</a>
6.17	세계일보	일·가정 동시에 지키는 ‘시간제 정규직’ [심층기획-출생률, 유연 근무에서 답을 찾다]	강민정 연구위원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6508190">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6508190</a>
6.20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250만원으로… 실효성 있을까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9520288">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9520288</a>
6.21	헤럴드경제	합계출산율 1.49명 네덜란드 비결은 ‘유연근무’ [0.7의 경고, 함께돌봄 2024]		<a href="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21050421">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21050421</a>
6.24	국민일보	육아휴직 쓴 아빠 70%… 눈치 덜 보는 대기업맨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135002">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135002</a>
6.18	세계일보	‘네덜란드·獨 유연근무’ 왜 적용 못하나 [심층기획-출생률, 유연 근무에서 답을 찾다]	정성미 연구위원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7515016">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7515016</a>
6.25	여성동아	“스웨덴, 육아휴직 480일 중 90일 아빠가 안 쓰면 자동 소멸”		<a href="https://woman.donga.com/issue/article/all/12/5016724/1">https://woman.donga.com/issue/article/all/12/5016724/1</a>
6.21	한겨레21	딥페이크·불법촬영… ‘디지털 폭력 산업’ 얼굴을 찾아라	김애라 부연구위원	<a href="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81.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81.html</a>
6.24	한겨레	스토킹 실행 비율, 평균보다 10%p 낮아…“접근금지 큰 효과 없다”	김정혜 부연구위원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618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6189.html</a>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출산지원금 사업을 급여 수준과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 제안

###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4.06.20]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62963&volume=62951>